

피의사실 보도의 요건

- 윤리적 범죄 수사 보도를 위한 원칙 -

박 영 흠*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국문 초록

언론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지만 바람직한 보도를 위한 기준과 원칙은 정립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의자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춘 사법적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는 저널리즘 원칙을 적절히 조화시켜 윤리적 피의사실 보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이다. 연구는 법원 판례와 언론 윤리강령을 기초로 피의사실 보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요건을 시론적으로 도출해 제안했다. 연구는 첫째, 피의자가 공인일 경우, 둘째, 국민 안전과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경우, 셋째,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서 유무죄 여부에 다름이 없는 경우 피의사실 보도가 가능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넷째, 독립적 취재와 교차 검증, 다섯째, 수사 기관과 피의자 사이의 균형, 여섯째, 정보원의 투명성이 필요하며, 일곱째, 수사 단계별 중계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안의 취지는 모든 피의사실 보도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도, 피의사실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언론은 제한된 조건에서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피의사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데 있다. 연구는 또한 제시한 피의사실 보도의 요건을 몇 가지 실제 범죄 수사 보도 사례에 적용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해보았다.

주제어: 피의사실, 범죄 수사 보도, 언론, 언론윤리

* pyh98@kpf.or.kr

목 차

- I.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 II. 기존 판례와 윤리강령 검토
 - 1. 법원 판례 분석
 - 2. 언론윤리강령 분석
- III. 정당한 피의사실 보도의 요건
 - 1. 피의자가 공인일 경우
 - 2. 국민 안전과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경우
 - 3. 반사회적 중대 범죄의 경우
 - 4. 독립적 취재와 교차 검증
 - 5.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의 균형
 - 6. 정보원의 투명성
 - 7. 수사 단계별 중계 보도 지양
- IV. 보도 사례를 통한 요건의 적용
 - 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 보도 사례
 - 2.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관련 보도 사례
 - 3. 사법농단 수사 관련 보도 사례
- V. 결론을 대신하여

I.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 단계에 피의사실을 취재진에 공표하고 언론이 이를 보도하는 관행에 대한 논란이 생산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 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근자에 피의사실 공표와 보도에 관한 격렬한 논란을 촉발한 것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 대한 수사였지만, 이 문제에 관한 논란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2010년 한명숙 전 총리 수사, 2011년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 수사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됐다. 사건의 성격은 조금씩 달랐지만, 국민 관심이 집중되는 대형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선별적으로 제공하여 수사에 유리한 환경

을 조성하고 피의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한다는 비판은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규정되어 있다.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1953년 제정된 이래로 실제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수사기관 종사자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 조항은 사실상 규범력을 잃고 사문화되어 있으며, 현실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흔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크고 작은 범죄 수사 관련 보도를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피의사실 공표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충돌하고 있다. 국가의 범죄 수사 기능, 수사공무원의 직무상 중립성, 공정한 재판 기능, 범죄 피의자의 인격권과 명예 등이 피의사실 공표에 의해 침해당할 수 있다(조기영, 2022). 다만 법 이론적 접근과 별개로 사회적 차원에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불거진 것은 다른 무엇보다 피의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봐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광범위하게 유포해 피의자에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면 피의자가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확정된 범인으로 미리 낙인찍힐 우려가 있다. 이 같은 낙인 효과로 인한 피해는 나중에 무고함이 밝혀진 뒤에도 손쉽게 회복되지 않는다.¹⁾ 전문 법관조차 언론이 형성한 유죄에 대한 선입견에 배치되는 판결을 하기가 쉽지 않다(김성룡, 2014)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언론 보도로 인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예단을 갖게 될 우려가 있으며, 강고하게 형성된 부정적 여론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는 데

1) 1998년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과 2004년 쓰레기 만두소 사건은 무분별한 피의사실 보도 이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미 기업은 폐업이나 도산한 뒤였고 결국 피해 구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 사례다.

부담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김기창, 2005; 김현숙, 2019).²⁾ 이는 헌법 제26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초상과 성명 등의 공개로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김현숙, 2019).

법무부는 이러한 논란에 대응해 훈령으로서 2010년 1월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제정한 바 있고, 이후 2019년 12월 이를 한층 강화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은 형사사건의 피의사실 공개를 엄격히 금지하고 공개소환 금지,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 일체 금지, 구두 브리핑 폐지 등 기존의 공보 관행 대부분을 금지하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등 취재·보도 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박희봉·한동섭, 2020).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기관의 피의사실 보도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의사실 공표죄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법조항이 아니다. 물론 언론인도 피의사실 공표죄의 공범이나 교사범이 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피의사실 공표와 피의사실 보도는 밀접히 연관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행위는 아니다(임찬중, 2019). 기자가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피의사실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으며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한 공보 과정을 통해 취득한 경우도 많으므로 피의사실 보도는 그 자체로 위법이 아니다. 따라서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를 논하면서 언론의 모든 피의사실 보도가 똑같은 위법성이 있다고 간주하거나 무조건 피의사실 공표라는 범죄 행위의 결과물인 것처럼 오인하는 일각의 시선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언론의 피의사실 보도와 관련해서는 피의사실 공표죄 논쟁에서 제기되는 이슈들과 별개로 따져봐야 할 지점들이 있다.

2)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에게는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현숙, 2019).

범죄 수사에 관한 보도는 19세기 미국에서 대중 상업 신문이 등장할 때부터 뉴스의 핵심 소재이자 독자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 대중 언론의 탄생 때부터 범죄 보도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뉴스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기 장르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언론의 범죄 보도 대부분이 공소 제기 전 단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박용규, 2011) 공판 개시 이후 단계부터 언론이 관심을 갖지 않는 문제 (박영흠, 2020)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판 청구 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범죄 수사 보도를 죄악시해선 곤란하다. 범죄 수사 보도에도 일정한 순기능이 있고, 때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범죄 수사 보도는 첫째, 범죄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형성하고 범죄의 확산이나 추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범죄에 대한 여론을 형성해서 형사사법기관의 활동 및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해준다. 셋째, 사회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와 규범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법적·도덕적 규범의 형성과 내면화 및 사회 안정화에 기여한다. 넷째, 밀행적 성격을 갖는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 또는 관행을 드러냄으로써 그러한 기관들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공한다.³⁾ 다섯째, 수사력을 집중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피의자의 소재 파악이나 검거에 기여한다. 이러한 범죄 수사 보도의 긍정적 기능은 언론 본연의 역할인 환경감시 기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승선·김연식, 2008).

만약 수사기관을 통한 범죄 수사 취재와 보도가 봉쇄된다면 발생하는

3) 특히 정치권력이나 재벌 등이 공소 제기 전 수사기관에 압력이나 청탁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 또는 축소시킬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감시 행위는 매우 중요하다. 피의사실 보도를 엄격히 금지하는 경우 이처럼 권력이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소 제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도를 할 수 없어 국민들이 해당 사실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은폐될 가능성이 크므로, 내사나 수사 단계에서도 범죄사실에 관한 보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부작용도 있다. 피의사실 보도 일체가 부정될 때 언론은 기소 시점에 이르러서야 기사를 쓸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범죄 발생과 기소 시점 사이의 시간적 거리 때문에 사실상 뉴스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잃게 된다. 이는 단순히 언론기관의 손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적 관심사나 중요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심석태, 2016). 특히 선출직 고위공직(후보)자의 권력형 비리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는 공익에 부합하고 때로는 긴급성을 띠며, 이러한 정보를 전달받는 것은 주권자 시민의 정당한 권리에 해당한다.

알 권리는 헌법에 조문으로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1991. 5. 13. 90헌마133 결정)과 법원 판례를 통해 실제적인 헌법적 권리로 자리 잡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르면 알 권리는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로서, 그 자유권적 성질의 측면에서는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받지 않으며, 개인은 접근 가능한 정보원, 특히 신문·방송 등 매스미디어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헌법재판소, 1998. 10. 29. 98헌마4 결정). 공중이 의사나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의 중요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높아진 현대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알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권적 성격을 띠게 되면서 그 의미가 더 커지고 있다(이재진, 2022). 물론 알 권리가 유보 조항에 의해 제한될 순 있으나 그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알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제한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허경미, 2013).

이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비판 이후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일체에 대한 공개금지를 원칙으로 삼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개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

적이 제기됐다(문재완, 2020a). 또한 수사기관의 대다수 공보 규정이 과도한 수사기관 중심주의, 정보원의 단절, 개별적 접촉 회피 현상 초래, 공개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장치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박희봉·한동섭, 2020). 과도한 취재 제한으로 인해 부정확한 추측성 보도와 허위조작정보가 범람하면 피의자의 인권이 오히려 더 심각하게 침해당할 소지도 있다(문재완, 2020a).⁴⁾ 따라서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두 권리는 모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이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전적으로 배척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의사실 보도를 바라보는 비판적 시선에 일관성이 없는 것도 문제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어떤 피의사실 보도는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보도로, 이와 다른 피의사실 보도는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보도로 평가하는 이중적·모순적 양태가 광범위하게 확산해 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많은 이들이 진영 논리에 입각해 자신이 소속된 정파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수사와 불리하게 작용하는 수사를 놓고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임찬중, 2019). 예컨대 조국 전 장관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보도를 비판했던 이들 중 상당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농단 수사는 환영했고 후자의 수사를 비판했던 이들 중 상당수는 전자의 수사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식이다. 이처럼 피의사실 보도에 대한 평가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검찰과 경찰이 모두 광범위한 피의사실 유포를 하는 상황임에도 비판적 논의는 정치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검찰 수사 보도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공판 청구는 커녕 송치가 되기 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일반 시민의 피의사실과 관련한

4) 법무부는 2022년 7월 공보의 요건과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오보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감안하여 서면자료 외 공보방식을 다양화하고 수사 담당자의 직접 공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선하여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보도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별로 없는 것은 의아한 일이다.

수사 대상이 누구든 간에 피의사실 보도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일관된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겠지만, 명확한 기준의 정립과 사회적 합의가 지연되면서 관련된 논의가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정당한 피의사실 보도가 맹목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검찰과 언론의 정치적·경제적 이득을 노린 비윤리적 피의사실 공표·보도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피의사실 보도가 불가피하다면, 논쟁을 정파적으로 소모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공익적 목적과 효과가 큰 ‘좋은’ 피의사실 보도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정립하여 순기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언론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데 검찰 수사와 관련된 피의사실 보도가 큰 영향을 미치고 법조 보도 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비등하면서 취재 현장에서도 바람직한 범죄 수사 보도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원하는 상황이다. 피의사실 보도를 무조건 죄악시하는 규범적 비평을 넘어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논의가 필요한 단계다.

그러나 피의사실 공표죄 존치의 적절성에 대한 법학자들의 논의와 비교할 때 피의사실 보도에 관한 언론학자들의 논의는 많지 않다. 피의사실 보도 관련한 명예훼손 청구 소송에서 기각과 인용의 요건을 언론학 관점에서 분석한 김희경·유수정(2022)의 연구와 판례 분석을 통해 피의사실 보도가 법적으로 면책받는 요건을 밝힌 정영주·박성순(2020)의 연구, 수사공보규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토대로 알 권리와 인격권이 조화된 범죄 보도 방향성을 고민한 박희봉·한동섭(2020)의 연구를 제외하면 관련한 논의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그간 피의사실 보도와 관련된 논의는 법학계에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비판적 논의와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연구는 저널리즘의 고유한 가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보니 범죄 수사 보도 일체에 대한 부정적 시선 아래 수사기관의 범죄 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모든 범죄 보도는 공판 청구 이후에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김기창, 2005; 김태홍, 2013; 김봉수, 2019). 언론의 자유나 알 권리가 무제약의 기본권이 아님을 들어 형사사건에 대하여 일정 기간 보도 제약을 두는 것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거나(김기창, 2005) ‘알 권리 도그마’의 과잉을 지적하며 피의자의 인격권과 알 권리 또는 언론의 자유 간 이익교량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조기영, 2022), 심지어 공소 제기 전까지뿐 아니라 1심 재판 종결 전까지 피의사실의 공개를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까지 제안한다(한상훈, 2021).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점까지 지연될 뿐이라는 것이다(박상기, 2013).

본 연구는 이처럼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피해 범익에 치중하여 알 권리의 훼손에 대한 소극적 관심에 그치는 접근을 넘어, 저널리즘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언론학적 관점에서 피의사실 보도 논쟁을 재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피의사실 보도가 사법과 언론이라는 상이한 영역 간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면, 법적 논의에 지나치게 경도되기보다 사법적 원칙과 저널리즘 윤리를 적절히 조화시킨 해법이 요구된다. 물론 이러한 연구가 기존 논의를 뒤집어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격권의 중요성을 도외시하고 알 권리의 중요성만을 강변하는 방향이 되어선 곤란하다. 무분별한 피의사실 보도의 폐해에 대한 비판과 우려는 분명 설득력이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정치 갈등을 사법화하고 형사사건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형적 정치문화(김기창, 2005)에 언론이 동원되거나 협력했다는 지적도 부정하기 어렵다. 뉴스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저널리즘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언론은 이러한 우려와 비판을 불식시키며 변화를 통해 책임 있는 응답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균형 있게 충족시킬 수 있는 정당한 피의사실 보도의 요건을 제안할 것이다. 피의사실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기자들이 맞닥뜨리는 조건은 상황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추상성을 띠는 한계는 불가피하지만, 현장

의 언론인들이 실무에 참조하거나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요건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보도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와 한계를 판시한 법원 판례와 바람직한 피의사실 보도의 방향을 기술한 언론 윤리강령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정당한 피의사실 보도의 요건을 도출할 것이다. 이어 요건의 모호성을 부분적이거나 극복하고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몇 가지 실제 보도 사례를 가져와 제안된 요건과 대비하고 보도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검토할 것이다.

II. 기존 판례와 윤리강령 검토

1. 법원 판례 분석

법원이 형사 판례를 통해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경우는 드물지만, 피의사실이 공표된 결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인용되거나 기각된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요건을 밝힌 바 있다. 법원이 피의사실 공표행위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기준에 부합한다면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보도해도 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피의사실 보도는 그 자체로 위법이 아니므로 위법성의 조각과 직접적 관련성은 없지만,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피의사실 공표와 보도의 요건을 참조한다면 윤리적으로 정당한 피의사실 보도의 요건을 도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해 발표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런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125, 10222 판결).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발표는 ▲ 일반 국민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 ▲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돼야 하고 ▲ 정당한 목적 하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공식 절차에 따라야 하며 ▲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언론 보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도 함께 내렸는데, “신문보도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라는 또다른 법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과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위법성의 조각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고, 이러한 이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서는 보도 목적의 공익성과 보도 내용의 공공성, 보도 매체의 성격과 보도 내용이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것인가의 여부, 보도의 근거가 된 정보원의 신빙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과 공정성 및 그 표현 방법,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 등이 입게 될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서는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공적 인물이 아닌 사인(私人)의 경우 가급적 익명을 사용하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 10125, 10222 판결).

또다른 여러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언론이 피의사실 보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고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55510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892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79262 판결). 한편 대법원은 또다른 사건 판결에서도 보도 내용이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달리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도가 없고 보도의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해 피해 구제만으로 명예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므로, 언론기관은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보도 내용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55510 판결).

요컨대 법원은 피의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조건으로 보도 목적의 공익성과 보도 내용의 공공성 및 긴급성을 제시하였고,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는 증거가 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면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기사 작성 방식에서 피의자의 혐의를 확정된 범죄로 오해하지 않도록 내용과 표현에 주의하고, 피의사실 정보를 입수한 경로와 방법이 확실하고 투명해야 하

며, 피의사실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정영주·박성순, 2020; 김희경·유수정, 2022). 이상의 항목들은 언론의 피의사실 보도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해석해도 무방해 보인다. 다만 이러한 요건들은 공공성·객관성·공정성 등 언론학 내에서도 논쟁의 소지가 있는 다분히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과 주체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질 소지가 있으므로,⁵⁾ 구체적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고 자의적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높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느 정도 내용을 상세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언론윤리강령 분석

국내 언론단체나 언론사가 마련한 언론윤리강령과 준칙에도 범죄 수사 보도로 인한 피의자의 명예훼손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저널리즘을 실현하기 위한 조항들이 다수 규정되어 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채택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이 일반적 보도준칙을 제시한 제3조를 보면, 제8항(피의사실의 보도)에서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사실은 진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는 ‘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의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 뒤, 그 1항(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에서 ‘언론인은 형사사건의 피의

5) 피의사실을 공표한 수사기관과 이를 보도한 언론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의 판결을 분석한 김희경·유수정(2022)은 법원조차 보도의 진실성과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기준과 적용 방식은 일관되지 않았으며, 보도의 표현 양식과 관련해서도 독자가 오인할 수 있는 단정적 표현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자 및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현행범인 경우와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경칭의 사용 여부는 개별 언론사의 편집정책에 따른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2011년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에도 참조할 만한 조항들이 있다. 이 준칙의 제2장(인격권)은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뒤,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와 병명,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언론은 범죄 사건의 경우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규정하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및 피해자,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윤리적인 범죄 수사 보도에 대한 고민을 담은 준칙을 마련한 언론사들도 있다. 공영방송 KBS는 2020년 개정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서 '모든 범죄의 피의자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단정적 표현을 금지했다. 또한 ▲ 피해자의 신원 파악 등과 같이 사건수사를 위해서 공개수사가 불가피한 경우 ▲ 연쇄범죄의 가능성이 있어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 공표가 필요한 경우 ▲ 국정에 관한 사항이나 국민이 의혹을 가지는 사건 등에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피의사실을 보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피의자의 전과, 프라이버시, 가족관계 등을 보도할 때 과연 보도할 만한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흥미를 위해서 피의자의 신상에 대해 보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직자 또는

대기업 고위관리자 등의 경우, 직책이나 직함이 범죄사실, 사고 등 기사 내용의 일부를 구성할 때는 직책, 직함을 익명처리된 성명 표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자사 취재보도준칙에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을 따로 마련해놓고 있다. 2020년 개정된 이 세칙의 기본원칙을 보면, ‘독립적 취재와 보도’ 조항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 사실 확인을 통한 객관적 보도 및 진실 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사기관이나 피의자 또는 다툼이나 분쟁의 관련자들 가운데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소홀하게 취재하지 않는다. 또한 그 보도가 어느 한쪽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항상 유의한다’고 명시했고, ‘사건 관련자의 신원 보도’ 조항에서는 ‘공인이 아니거나 공익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증인 및 피해자는 물론 수사 대상자, 그리고 가족 등의 이름, 거주지, 소속 기관, 직위 등을 함부로 보도하여 그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신원에 대한 보도는 더욱 주의한다’고 밝혔다. 이 세칙의 ‘수사 단계의 취재 보도’ 조항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1) (신중하고 정확한 기소 이전 보도) 수사 기관이 기소하기 전까지는 독립적 취재, 교차 검증 등을 통해 사실을 최대한 확인하는 노력을 한 뒤 신중하게 보도한다. 관련 사실의 실체는 재판 단계에 가서야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신속성보다 정확성을 우선한다.

2) (일방적, 단정적 보도의 지양) 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 수사(내사 포함) 또는 고소·고발 단계에서는 수사 대상자에게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혐의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거나 제목을 달지 않도록 유의한다.

3) (발표 주체의 공개) 보도에 등장하는 혐의 내용 등 사실관계는 출처와 취재원을 최대한 자세하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취재원이 이름을 요구할 경우에는 취재보도 준칙의 익명처리 원칙에 따른다.

4) (익명 보도) 수사 기관 관계자를 익명으로 인용하여 보도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그 발언의 사실 여부는 다른 경로를 통해 추가 확인하여 교차 검증하고, 피의자의 반론을 반영한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반론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사실을 기사에 밝히되, 이것이 수사 기관 관계자 발언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란 점을 각별히 유의한다.

5) (수사 대상자 호칭의 구분) 범죄 혐의를 받는 수사 대상자는 수사 기관 입건 전에는 용의자, 입건 뒤에는 피의자로 표현하되 피의자가 현행범이거나 범죄를 인정할 만한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인질 사건과 같이 범죄행위가 다수에게 공개된 경우에는 범인(인질범, 유괴범, 납치범 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6) (수사 대상자 실명 공개) 수사 대상자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은 당사자 의사에 반해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통상 3급 이상) 등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의 경우, 범인의 체포 및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상 필요한 경우, 다수 언론에 의해 그 실명이 널리 공개되어 익명 유지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편집국장 등 취재보도 부문의 책임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결정한다.

7) (수사 대상자의 가족, 친인척, 지인의 신원 보호) 수사 대상자의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의 신원은 수사 대상자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여,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을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사 대상자의 실명 공개 기준에 준하여, 공인이거나 널리 알려진 인물인 경우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편집국장 등 취재보도 부문의 책임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결정한다.

8) (반론 보장) 반론과 교차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일방의 진술이나 주장만으로는 진실에 닿을 가능성이 낮은 만큼, 반론을 기사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상황, 어떤 단계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쪽 주장을 길게 나열해 기정사실화한 뒤 짧게 반론을 덧붙이는 보도는 지양하고, 처음부터 충분한 반론을 반영한 종합적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 ① 공소장 등 수사 기관의 공식 발표를 기사화할 경우에도 공소사실에 대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반론을 충분히 반영한다. 이들의 입장을 직접 취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피의자 쪽의 입장을 대변할 만한 관련자를 취재하여 최대한 균형감 있게 보도하도록 한다.
- ② 피의자 쪽 주장을 기사화할 경우에도 한쪽의 주장임을 명백히 하고, 수사기관 쪽 반론 또는 해명을 함께 신도록 한다.
- ③ 반론은 기사 제목의 주제 또는 부제에 반영한다. 반론을 반영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확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기사에 반영하고, 후속 보도를 통해서라도 다루도록 노력한다.

9) (선입관 조장에 유의) 수사 대상자의 수사 기관 출석 또는 출석 연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태도 등 혐의와 직접 관련 없는 사안을 보도할 경우엔 독자에게 유무죄에 관련한 선입관을 심어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보도한다. 수사 대상자의 범죄 전력도 독자에게 선입관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수사 중인 사안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해 보도 여부를 결정한다. 독자를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 수 있는 감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도 최대한 피한다.

10) (사생활 보호) 수사 대상자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의 사생활은 범행 동기 등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이상 보도하지 않는다. 그 가족이나 주변 인물에 대한 취재보도가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한다.

11) (오보 대응 및 사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해도, 수사 단계의 보도에서 오보나 표현의 잘못 등이 인정되면 이를 시인하고, 당사자의 권익이 최대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분명하고 충분하게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사과의 뜻을 함께 밝힌다.

윤리강령이나 준칙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조건이나 상황을 모두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없으므로 결국 도덕과 규범을 일반론적으로 천명하게 되는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확인하도록 노력한

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존중해야 한다’,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항상 유의한다’, ‘각별히 주의한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만으로는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지침이 되기 어렵다. 예컨대 피의자의 반론을 기사에 반영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노력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는 ‘최선’이라 할 수 있으며, 노력했지만 끝내 취재에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윤리는 의무와 강제외 영역이 아니며 일정한 추상성을 떨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더라도, 이처럼 추상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이는 결과적으로 언론윤리에 대한 무관심을 야기한다. 따라서 기존 강령이 제시한 언론윤리의 방향성을 반영하되 이를 좀더 미시적 현실 수준으로 끌어내려 어떤 보도까지 가능하고 어떤 보도를 해선 안 되는지, 어떤 노력과 주의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참조 가능한 비교적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Ⅲ. 정당한 피의사실 보도의 요건

이 장에서는 앞서 검토한 법원 판례와 언론의 윤리강령을 종합하여 피의사실 보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요건을 도출해 제안한다. 앞의 세 가지 요건은 피의사실 보도가 가능한 대상 사건이 무엇 인지를 규정하는 요건이며, 뒤의 네 가지 요건은 피의사실 보도의 형식과 방법에 관련한 요건이다. ‘무엇을’ 보도할 것이며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를 규정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최악시해선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피의사실 보도는 지극히 제한된 사안에 대하여 엄격히 정제된 방식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요건들은 탐색적 차원으로서 필요충분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계속 보완되거나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1. 피의자가 공인일 경우

공인이 피의자인 사건의 수사 내용 및 피의사실은 보도할 수 있다. 법원은 공인⁶⁾에 대한 언론 활동의 경우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명예훼손 책임을 면제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원칙은 피의사실 보도에도 유사하게 적용되어야 한다.⁷⁾ 공인이 피의자인 범죄는 대중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이 크다는 점에서 당연히 알 권리의 영역에 속해 있으며, 사인과 달리 공인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경제적·상징적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로 인한 권리 침해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물론 공인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그가 가지고 있는 방어적 수단의 수준에도 큰 차이가 있으며, 언론은 공인 피의자의 유형을 준별하여 보도의 방식과 수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위공직자나 재벌 총수 등의 권력형 비리 사건의 경우 검·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기소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안을 탐사하여 수사기관이 밝혀내지 않은 새로운 피의사실을 발굴하고 수사 과정을 감시하는 일은 언론의 본령에 해당하므로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

이 같은 원칙은 뒤집어 말한다면 사인(일반 시민)에 대한 범죄 수사

6) 공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획정한 기준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법원도 공인 개념을 명확히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공인으로 인정된 판례와 선행 연구(심석태, 2016; 이승선, 2020)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직무에 부여된 재량권이 크고 대중에 갖는 영향력이 막대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공직 입후보자뿐 아니라 판·검사, 법무·국방·감사·치안·세무·금융 분야 공직자, 언론·문화·체육 분야의 유명인사, 대기업 경영자와 재벌 총수 등을 공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7) 대법원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보도와 피의사실 공개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인의 피의사실은 보도 대상’이라는 요건은 언론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보도와 선정주의를 정당화하는 명분이 아니라, ‘보도 대상이 공인의 피의사실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무차별적 보도를 제한하는 근거로 작용해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실적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보도자료나 중간수사 발표 등을 통해 사인의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보도는 비록 익명으로 이뤄진다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근절되어야 하는 관행이다. 아울러 여기서 한 가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범주는 공인의 가족이다. 배우자·부모·자녀 등 공인의 가족은 엄밀히 말한다면 사인이므로, 범죄가 공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았다면 보도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가령 공인의 자녀가 학원폭력이나 음주운전 등 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 공인인 부모가 범죄를 은폐하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등 범죄 수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상당한 물증이나 정황이 없는 한 이러한 사안은 보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다만 공인의 가족 또는 친인척이 공인과의 관계를 내세워 부당한 대가나 특혜를 제공받는 등 공인의 지위와 연관성이 분명할 경우엔 공인이 직접 연루되지 않은 사인의 범죄라 하더라도 당연히 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국민 안전과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경우

피의자가 사인이라 하더라도 국민 안전과 제도 개선 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을 보도할 수 있다. 이 요건은 법원 판례에서 모호하게 표현된 공익성과 공공성이라는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론이 범죄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해당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추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새로운 수법의 보이스포킹 등 신종 범죄나

전세 사기 등 정보의 유무가 범죄 피해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고하여 범사회적으로 확산하는 피해를 줄이는 것은 언론의 공적 역할에 해당한다. 특히 빨리 보도되어 공유될수록 추가 피해자 양산을 막거나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긴급성이 있을 때 보도의 필요성은 한층 더 커진다.

또한 범죄 수사 과정에서의 보도가 부당한 사법 관행을 변화시키거나 정책·법령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피의사실 보도는 정당화될 수 있다. 예컨대 2020년 ‘n번방’ 사건으로 불린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의자 조주빈은 공인이 아니었지만, 체포 이후 송치 전 단계에 이미 수사 과정과 피의사실이 상세하게 보도되었고 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뜨거운 분노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철저한 수사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미온적 태도를 견지해온 검·경과 법원을 압박했다. 뒤늦게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검찰은 유사 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재수사에 들어갔고(최형원, 2020. 3. 25.), 법원은 새로운 양형 기준 마련에 나섰다(박지애, 2020. 3. 25.). 피의사실 보도가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해악을 알려 여론을 촉발함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⁸⁾

3. 반사회적 중대 범죄의 경우

중대 범죄의 경우 유무죄 다툼이 없는 피의자에 한하여 피의사실을 보도할 수 있다. 이 요건 역시 보도 목적의 공익성 및 보도 내용의 공공성과 관련이 있다. 납치, 테러, 연쇄살인, 친족살인, 혐오범죄, 인신매매 등의 반인륜·반사회 범죄처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 공동체의 기본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사건으로서 피의자가 현행범이거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등 유죄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 보도가 가능

8) 최근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에 대한 피의사실 보도가 피해자 보호조치와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는 여론을 불러일으킨 것도 유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하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 법무부의 연방검사 업무지침에 따르면, 이미 사건 내용이 대중에게 상당히 알려진 경우, 수사 중에 있다는 사실이나 수사 진행·진척 상황의 공개로 시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사실 공표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김봉수, 2011). 피의사실 보도를 억압하고 적절한 공보 절차가 뒤따르지 않으면 허위정보에 기반한 소문을 양산할 수 있기도 하거니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수사에 대한 정보 제공은 국민의 알 권리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다만 유무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성급히 범인을 단정하는 보도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며, 피의사실에 관한 불확실하거나 과장된 추측성 보도는 오히려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자제되어야 한다. 또한 반사회적 중대 범죄의 범위를 지나치게 폭넓게 잡아 무분별한 범죄 보도가 이루어지는 일 역시 용납될 수 없으므로, 어떠한 범죄까지 중대 범죄로 간주할지에 대한 언론계의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신상 공개를 결정한 사건들의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귀납적으로 보도 가능한 범죄의 기준을 도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때에도 범죄 내용에 대한 보도와 피의자의 신원에 대한 보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피의자의 신상과 사생활을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일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인격권 침해 예방할 수 있다(이승선·김연식, 2008). 앞서 언급한 조주빈의 사례와 같이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 개인적 서사를 공개하는 보도가 정당한지에 대한 별도의 고민이 필요하다. 법원 판례와 언론 윤리강령에서도 사인의 경우 가급적 신원 노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와 같이, 신상 공개가 가져올 공공적 이익과 그로 인한 피의자 및 가족의 인격권 침해 등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다.

4. 독립적 취재와 교차 검증

위에 열거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의사실 보도는 수사기관의 발표나 확인이 아닌 독립적 취재를 통해 엄격한 교차 검증을 통과한 사실을 근거로 이뤄져야 한다. 언론인들이 말하는 ‘객관적 사실’의 요건은 선형적으로 결정돼 있는 게 아니라 직업집단 내부의 인식과 관행 속에서 담론적으로 구성된다. 그간 한국 언론의 ‘사실성’ 요건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복수 취재원에 대한 삼각확인을 요구하는 해외 언론의 그것과 비교할 때 매우 관대했으며, 특히 전통적으로 범죄 수사 보도의 경우 오로지 수사기관의 일방적 발표와 확인만으로 사실성이 충족된다는 것이 기존 경찰·법조 기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관행적 인식이었다. 권력 감시를 위한 의혹 제기라는 언론의 책무를 수행한다는 논리가 명분을 제공했고, 강제 수사권이 없는 언론의 필연적 한계가 부실한 사실성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발표나 확인이 그 자체로 사실을 구성한다는 도그마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워며, 범죄 수사 보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느슨한 요건이 적용되었던 관행을 재고하고 오히려 반대로 더 엄격한 사실성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보도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진실성과 상당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언론이 실제적 진실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그 한계 속에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편의적으로 사실을 구성하는 것은 피의자의 명예와 인격에 미치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고려할 때 분명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공인에 대한 피의사실 보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언론 보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에 해당하는지 상당성을 잃은 악의적인 공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로서 ‘취재 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들고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수사기관의 발표나 관

계자의 개별적 확인만으로 기사를 쓰는 것은 관행상 범죄 수사 보도의 주요한 취재 방식이었지만, 법원은 수사 관계자의 비공식적 확인이나 정보 제공에 의존해 보도한 경우 이것만으로 진실 오신의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며(이승선·김연식, 2008),⁹⁾ 수사기관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경우에도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김희경·유수정, 2022). 설령 수사기관이 공식 절차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를 받아쓴 경우 상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실제적 진실인 것처럼 기사화되고 여기에 위법성 조각의 효과까지 부여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양재규, 2017).

요컨대 수사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 취재를 통한 확인과 검증이 피의사실 보도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아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의 눈높이를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일방적 발표나 보도자료를 받아쓰는 ‘발표 저널리즘’은 더 이상 용인되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정보를 문답의 맥락상 추정하여 ‘알려졌다’, ‘전해졌다’와 같은 무주체 서술어로 기사에 담아내는 관행도 마찬가지다. 언론은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수사기관에 의해 발표되거나 유출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교차 검증해야 하며, 수사기관 외부에서의 취재를 통해 검증되지 않았다면 해당 피의사실은 가급적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¹⁰⁾ 그럼에도 부득이 보도해서 알려야 할 공적 이유가 있다면, 보도 필요성에 대한 고민의 과정과 보도를 결정한 이유를 투명하게 밝히고 보도 사실이 교차

9) 대법원은 수사 진행사항에 대한 정당한 발표권자가 아닌 사람의 비공식적인 확인을 거쳤다가거나 구속영장 사본 등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를 단순히 열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53425 판결).

10) 외부 취재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취재가 어렵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은 언제나 명확하고 일관된 해답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언론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의적 해석을 하는 것보다 가급적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수적 대응을 하는 쪽이 바람직할 것이다.

검증을 통해 확인되지 않았음을 고지해야 한다. 물론 피의사실은 본질적 속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검증에 한계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모든 피의사실은 최종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니다), 이럴 땐 다음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5.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의 균형

수사기관과 피의자 측의 주장을 균형 있게 전달하며, 피의사실이 수사기관의 일방적 주장임을 기사에 명시해야 한다. 법정에서 엄격히 적용되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리로 발전한 것으로서 형사절차 이외의 일반법 영역에 확대 적용되지 않으며, 언론이 무죄추정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문재완, 2020b). 그럼에도 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언론도 피의자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죄추정 원칙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윤리적으로 그 보도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는 언론인들이 주체가 되어 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인권보도준칙 등에서도 힘주어 천명한 바 있다.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피의사실과 피의자 측 주장의 균형성을 위해 힘쓰는 노력이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발표하는 피의사실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의 일방 당사자에 불과한 수사기관의 주장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열거한 피의사실 보도 대상이 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 중에 드러난 의혹을 단정적 사실처럼 보도해선 안 되며 피의자 측 해명과 반론이 양적·질적으로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한겨레 시행세칙에서도 밝히고 있듯 수사기관의 주장을 중심으로 서술하다가 마지막에 짧게 반론을 덧붙이는 형식적 기사는 지양해야 한다. 기사 구조, 문장의 배열 방식과 단어 표현 등 모든 측면에서 피의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의혹에 불과하며 피의자 측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음을 환

기시하여야 한다. 물론 공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측은 입장 표명을 꺼리기 마련이므로 취재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취재가 성사되지 않을 때는 가급적 피의사실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 보도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피의자 측과 접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사에 상세히 명시하고, 출고 이후라도 계속 접촉을 시도하여 의견을 반영, 기사를 수정해야 한다.

기사 본문뿐 아니라 제목에도 쌍방의 주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 기사 내용상으로는 제법 비중 있게 피의자 측 주장을 반영하였더라도 제목에는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피의사실만 강조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 판례 역시 독자가 기사 전체를 꼼꼼히 읽고 전체 맥락을 파악한 뒤 피의사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고 전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독자들은 기사 제목이나 일부 단어만으로 전체 내용을 추측하거나 맥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김희경·유수정, 2022), 현실의 뉴스 소비 행태에 맞춰 윤리적 요건도 설정되어야 한다. 최근 자살 사건 보도 시 자살예방 기관이나 긴급 도움 요청 방법을 안내하는 문구를 기사 하단에 첨부하는 일이 일반화된 것처럼, 필요하다면 피의사실 보도 시 해당 정보가 수사기관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함을 고지하거나 확정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유죄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문구를 상시 첨부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만하다.

6. 정보원의 투명성

정보 출처와 취재원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존 범죄 수사 보도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공식적 차원의 피의사실 발표를 기사화하는데도 발표 주체인 수사기관 담당자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식 브리핑의 경우조차 ‘관계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죄 수사 보도의 주어를 무조건 경찰이나 검찰로 상정하는 기사 작

성 관행(예컨대, ‘서울중앙지검은’)도 일반화되어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피의사실이 유포되면서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다. 수사기관 관계자가 수사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언론을 선별하여 은밀히 피의사실을 누설한 뒤 책임을 피해 가고 언론은 이를 단독으로 기사화하면서 수사기관과 언론이 유착하는 행태로, 익명 보도 관행이 양측의 공생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다.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공식 절차에 따라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취됐을 때 위법적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창구를 통하여 정보를 습득한 보도라면, 법적으로 언론의 책임을 묻기 어렵더라도 그 보도는 윤리적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언론이 정보 출처를 감추는 관행을 계속 이어간다면 정당한 피의사실 보도마저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의 결과물이라고 간주하는 독자의 맹목적 불신을 피해 가기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언론은 비공식적 절차를 통한 위법적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가담하여 단독 취재를 하던 관행과 절연하고 수사기관을 취재하여 밝혀낸 모든 피의사실의 취재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보도자료·브리핑 여부를 정확히 표기하고 해당 경찰관과 검사의 이름 및 직함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물론 공직자들이 노골적으로 익명을 요구하고 실명을 적는 기자의 후속 취재를 거부하는 한국의 왜곡된 공보 관행에서 취재원을 실명 인용하는 변화는 개별 언론인이나 언론사 차원의 결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¹¹⁾ 기자단 전체의 합의와 단합된 행동을 통해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비로소 투명한 실명 인용이 윤리적 보도 요건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따져봐야 할 문제는 수사기관 내·외부에서 수사 과정의 비위와 관련된 제보를 한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 보도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이럴 땐 익명 보도를 하는 이유를 상세히 밝히고 취재원이 위협해지지 않

11) 한겨레 시행세칙에서도 발표 주체의 실명 공개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보도에서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당 취재원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¹²⁾ 나아가 이런 예외적 경우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취재원의 실명을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7. 수사 단계별 중계 보도 지양

출국금지·압수수색·소환조사 등 수사 단계에서 파생되는 단편적 사실 보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언론은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단계별 이벤트를 ‘발생 사실’이라는 이유로 일일이 중계하는 관행을 고집해왔고, 이는 자연스럽게 수사 관련 보도의 과잉을 초래했다. 피의자의 출석이나 강제수사가 진행된다는 보도가 피의사실과 함께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주입되면 일반 독자들은 부지불식간에 수사기관이 두고 있는 혐의가 확정된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고, 이는 유죄의 낙인을 형성해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 피의자가 검찰청에 출두하는 장면이 본인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되면서 인격권이 침해될 소지도 있다. 혐의의 경중이나 실제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당연히 행하는 절차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중계식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물론 단계별 수사 과정 전달 보도가 모두 잘못된 건 아니다. 전·현직 고위공직자나 재벌 총수가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두하는 장면은 알 권리를 위해 언론이 전달할 필요가 있고 역사적 기록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압수수색·구속 등 일부 강제수사는 수사의 방향이나 피의사실의 본질에 관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한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언론사의 자체 판단을 통해 제한적으로 보도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언론의 범죄 수사 보도는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수사기관의 사소한 행위 하나하나를 모두 기사화하며, 이런 파편화된 사실 보

12) 예컨대,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별다른 설명 없이 ‘법조계에 따르면’과 같이 모호하게 처리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도가 남발되다 보니 수사 관련 보도가 폭증하고 필요 이상으로 주목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다.¹³⁾ 이 요건은 피의사실 보도가 사안의 핵심에 집중하고 피의자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면서 최대한 절제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아울러 피의사실의 본질과 무관한 조사 과정에서의 에피소드나 가십 등 주변적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행태도 지양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의 부분적 진술, 조사받는 태도나 개인 서사 등 사소한 정보를 강조하여 대중의 즉흥적 관심을 자극하거나 피의자를 모욕주는 행태는 바로잡아야 한다. 수사기관과 달리 언론은 법적 처벌 여부를 넘어 도덕적 비판도 함께 수행할 수 있지만, 이런 비판은 사법적 판단을 앞둔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고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보도 사례를 통한 요건의 적용

이 장에서는 본 연구가 제안한 피의사실 보도의 요건을 몇 가지 범죄 수사 보도 사례에 적용하여 보도의 정당성을 가리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따져볼 것이다. 실제 사례를 참고하고 인용하는 이유는 본 연구를 수행하기 이전의 보도를 소급하여 재차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피의사실 보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명확한 기준 없이 비판받았거나 반대로 관습적으로 당연시됐던 기사들을 평가해보는 과정을 통해 앞서 제시한 요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향후 피의사실 보도의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생산적 목적임을 밝혀둔다.

13) 2023년 3월 배우 유아인이 마약류 투약 혐의 관련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나오는 과정에서 언론사 취재진 앞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한다”는 인터뷰를 한 바 있다. 연예인의 마약 투약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나 재벌 총수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와 비교할 때 시민의 사회적 삶에 미치는 영향과 공적 의미에 명백한 차이가 있다. 이런 경우까지 장기간 출석 조사를 마치고 나온 직후 귀가 장면을 보도하는 건 알 권리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 국민의 알 권리와 대중의 알고자 하는 욕망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 보도 사례

최근 피의사실 보도와 관련해 가장 뜨거운 논란을 촉발한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사였다. 조 전 장관은 언론의 여지가 없는 공인으로서 그의 수사 과정 중 피의사실에 대한 보도는 그 자체로 정당화되기에 충분하다. 고위 공직(후보)자인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취재와 보도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 다만 당시 검찰 수사가 조 전 장관의 부인과 자녀를 함께 겨냥했고 언론도 이들의 입시비리 의혹에 높은 비중을 두고 보도한 점을 놓고 일각에서 사인인 가족들까지 보도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검토가 필요하다. 2023년 2월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¹⁴⁾ 본 연구 이후 선고가 이뤄질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에서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조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된 피의사실이 공인인 조 전 장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언론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러한 정황과 앞서 언급한 ‘피의자가 공인일 경우’ 요건에 비춰볼 때 조 전 장관 가족의 피의사실에 대한 보도는 충분히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¹⁵⁾

14) 이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도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해당 범죄에 공모했음이 인정된 바 있다.

15) 이밖에도 조 전 장관 수사 보도에 대한 비판에는 언론의 기능과 취재 메커니즘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작용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많은 기사가 검찰 취재원에 의존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보도 전체를 싸잡아 검찰발 ‘받아쓰기’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2019년 8월 19일자 한국일보의 〈조국 딸, 두 번 낙제하고도 의진원 장학금 받았다〉 기사와 8월 20일자 동아일보의 〈고교때 2주 인턴 조국 딸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기사, 8월 20일자 경향신문의 〈조국 ‘사모펀드 투자’ 다음 해... 운용사에 ‘얼굴 없는 53억’〉 기사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이전 단계에 언론이 독자적인 취재를 통해 선제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탐사보도 사례이다(검찰이 공개수사에 착수한 시점은 서울중앙지검이 부산대와 고려대, 응동학원 등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2019년 8월 27일이었다. 이날을 기점으로 이전까지는 주로 언론이 자체 취재를 통해 선제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보

그러나 보도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개별 기사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여지는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밝혀낸 피의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피의사실을 전달하는 방식에 신중을 기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소홀하다면 보도의 윤리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2019년 9월 17일 조선일보의 <[단독]“조국 가족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수법, 영화 기생충과 닮았다”> 기사는 다섯 번째 원칙인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의 균형’을 잃고 수사기관의 주장에 편향된 시각에서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작성된 기사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리드로 시작된다.

딸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조국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가 동양대 재직 중 아들 조모(23)씨에게도 총장 직인이 찍힌 증명서를 여러 장 위조해 발급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앞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본지에 “정 교수가 원장으로 있는 동안 딸을 포함해 모두 4명에게 임의로 (상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고, 검찰도 이같은 혐의를 입증할 여러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수사기관 외부, 즉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동양대 관계자를 별도 취재해 정 교수가 표창장과 수료증을 위조 발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앞서 제시한 ‘독립적 취재와 교차 검증’의 요건을 상당 부분 충족시킨 것으로, 검찰 취재원에만 의존하는 전형적 기사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추가적 사실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위조했다’는 단정적 표현을 쓰는 것은 위험하다. 아직 해당 사실은 검찰과 동양대 측의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나중에 정 교수

도가 많았고, 이후로는 검찰의 수사 진척 상황을 파악해 알리는 보도가 많아졌다. 또한 언론이 제기한 의혹 중에는 기소나 유죄 판결에 이르지 않은 경우도 많았지만, 이런 이유로 강제수사권이 없는 언론의 의혹 제기를 모두 비윤리적이라 단정한다면 결과적으로 권력 감시 기능의 위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기사에 담긴 피의사실은 최종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기사가 작성된 단계에서는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면 확정된 범죄자가 아닌 피의자로서 정 교수의 입장이 함께 제시되며 기사가 양적·질적으로 균형을 갖추어야 하지만, 기사에 정 교수 측의 입장은 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이 내놓은 반박(‘조 장관은 청문회에서 “실제로 봉사활동을 해서 받은 표창장’이라고 주장했다’)이 단 한 줄 첨부되어 있을 뿐이다.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는 모호한 근거로 검찰 측 수사 결과를 기정사실로 단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균형을 잃은 기사 작성 방식이다. 기사 제목에서 피의자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발언(“기생충과 닮았다”)을 따옴표를 통해 그대로 인용한 것도 문제가 있다.

여섯 번째 요건인 ‘정보원의 투명성’도 떨어진다. ‘동양대 표창장과 수료증 등을 대조하는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크기나 형태가 거의 똑같았다고 한다’, ‘실제 표창장은 더 늦게 위조된 단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와 같이 취재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피의사실이나 수사 진척 상황을 전하는 문장이 계속 등장한다. 결정적 증언을 했고 제목에 인용된 발언을 하는 등 기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재원인 동양대 관계자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익명이 불가피했다면, 얼마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취재원인지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라도 제시될 필요가 있다.

2.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관련 보도 사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았다. 2016년 12월 20일 한겨레는 <[단독]우병우 “해경 상황실 서버 수색 말라”... 세월호 수사팀에 압력> 기사를 통해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를 하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의 교

신 기록이 저장된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특검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조국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정권의 요직에 있었던 공인으로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과정을 알리고 피의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책무에 해당하므로, 공판 청구 전 해당 사실을 보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될 순 없다. 특검으로부터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결국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 판단 아래 우 전 수석을 기소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는 데 그쳤고 끝내 불기소 처분됐지만 우 전 수석이 수사팀에 전화를 걸었던 사실은 법리상 형사처벌 가능성과 별개로 국민이 알아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으며, 공소 제기 전까지 보도를 할 수 없게 한다면 이러한 사안에서 알권리의 침해는 불가피해진다는 점에서 피의사실 보도의 정당성은 충분히 확보된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도 유죄를 단정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기사는 리드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해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단정적 표현을 쓰고 있다. 전화를 걸었던 행위와 그 내용이 외압으로서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기사를 작성한 근거는 “검찰 및 특검의 여러 관계자들이” 한겨레 취재진에 그렇게 밝혔다는 사실뿐이다. 직권남용죄는 법리상 유죄 입증에 대단히 어려우며 수사가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도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사를 단정적으로 쓰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검찰 및 특검의 여러 관계자들’은 기사 전체에서 ‘검찰 관계자’, ‘특검팀 핵심 관계자’로 인용되며 어떤 성격의 취재원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독자가 신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고 우 전 수석의 전화를 받은 광주지검 수사팀 등 수사기관 외부 취재원을 통한

독립된 사실 확인은 없었다. 피의자 측 반론은 “우 전 수석의 설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는 한 문장에 그쳤다. 물론 피의자 측이나 기타 취재원에 대한 추가 취재가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며 피의자 측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기사 내용만 놓고 봤을 때 결함이 있다는 평가는 불가피하다.

3. 사법농단 수사 관련 보도 사례

국민일보는 2018년 11월 27일 <[단독]檢,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이르면 30일 동시 구속영장 청구> 기사를 통해 사법농단 수사를 벌이던 검찰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획하고 있음을 보도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법관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은 사실로 확인된다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그 수사 과정과 피의사실이 국민의 알 권리 영역에 속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관련 피의자들 역시 전·현직 사법부 최고위직 법관이라는 점에서 명백히 공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의사실 보도가 정당하다고 해서 언론사들이 앞다퉀 모든 수사 단계를 중계식으로 보도하는 행태까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해당 기사는 “검찰이 이르면 오는 30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리드로 시작한다. 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뉴스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 그러나 아직 영장이 청구된 것도 아닌데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단독으로 서둘러 보도할 만큼 의미가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실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점에서 보도해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제 구속영장은 기사가 적시한 11월 30일이 아닌 12월 3일 청구됐다는 점에서 시점도 맞

지 않았다. 기사는 또한 “검찰은 27일 고 전 처장을 세 번째 불러 조사한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일정도 구체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는데, 이처럼 ‘수사 단계별 중계 보도 지양’의 요건을 어겨 수사 일정과 계획을 먼저 알아내거나 넘겨짚어 보도하는 취재 경쟁은 과잉 보도를 야기하고 독자의 관심을 사안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자칫 검찰의 불필요한 ‘보여주기’식 수사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또한 이 기사는 피의자들이 “수사에서 비협조로 일관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크다”거나 “이들이 혐의 부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 “혐의점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고 있다”는 검찰의 전언을 위주로 구성된 반면 피의자 측의 소명이나 입장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다섯 번째 요건인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의 균형성’을 현저히 잃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문장이 ‘검찰은’, ‘검찰에 따르면’, ‘검찰 고위 관계자는’과 같은 익명 취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알려졌다’, ‘전해졌다’, ‘파악됐다’는 의미가 불분명한 서술어로 끝맺고 있어 ‘정보원의 투명성’ 요건을 확보하는 데도 실패하고 있다.

V. 결론을 대신하여

최근 한국 사회에서 피의사실 보도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입장만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옥석을 가리지 않고 모든 피의사실 보도를 배척하거나 반대로 피의사실 보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옹호하는 주장이다. 전자는 주로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후자는 법조 기자들을 중심으로 한 언론계에서 제기된다. 접점을 찾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일방적 주장만 쏟아지다 보니 논의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적 보도가 반복된다. 수사기관은 자의적 기준에 따라 피의사실 공개

를 과잉 제한하는 공보 규정이나 훈령을 제정하여 알 권리의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평행선을 달리는 양극단의 주장에서 비합리적 측면을 배제하고 타당성 있는 측면을 취합하여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 정당한 피의사실 보도의 윤리적 요건을 정립하여 실천함으로써 정당하지 않은 피의사실 보도가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법원 판례와 언론 윤리강령을 기초로 피의사실 보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건을 도출해 제안했다. 모든 피의사실 보도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도,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보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언론은 제한된 조건에서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피의사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본 연구는 탐색적 차원에서 그간 논란이 되었던 요소들을 중심으로 일곱 가지 요건을 제시했지만,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요건을 보강하고 정교화하여 기자사회 전체가 현장에서 참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논문에서 제안한 일곱 가지 요건을 모든 보도에서 언제나 충족시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건 사실이다. 현장의 언론인들은 진실 보도의 위축을 초래한다고 우려하며 현실적으로 실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독립적 취재를 통한 교차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할 요건으로 제시한 부분은 취재원이나 시간의 한계상 현실에서 곧바로 구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취재 여건상 당장 실현할 수 없더라도 규범과 준거로서 일정한 요건을 설정하고 점진적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건 오늘날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언론으로선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요구다.

뉴스 이용자들은 이미 언론에 매우 높은 수준의 윤리적 실천을 요구하고 있으며, 취재·보도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언론에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중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의 핵심에 범죄 수사 보도가 자리 잡고 있다. 언론의 존립 기반이자 뉴스의 소비자인 이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외면한다는 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할 뿐 아니라 현

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뉴스 생산 현실을 이유로 지금의 관행을 타협 없이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언론은 신뢰의 위기도, 산업의 위기도 극복하지 못한 채 어떠한 윤리의 구속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유사 언론에 자리를 내주고 말 것이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원칙을 언론인들에게 제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참고 문헌

- 김기창 (2005). 피의사실 보도의 문제점. <피의사실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 발제집> 16-39.
- 김봉수 (2011).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의 규범적 한계에 관한 고찰: 형법 제126조의 사문화 현상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9권 1호, 55-78.
- _____ (2019). 피의사실공표죄의 해석상 문제점과 그 실효성 확보 방안. <형사법연구>, 31권 3호, 173-197.
- 김성룡 (2014). 대중매체를 통한 범죄혐의 보도와 형사사법: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5권 4호, 350-354.
- 김태홍 (2013). 수사기관의 언론에 대한 범죄정보제공의 제한. <동아법학>, 61호, 89-122.
- 김현숙 (2019).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경찰법연구>, 17권 3호, 73-100.
- 김희경·유수정 (2022). 법원의 피의사실 보도 면책요건에 대한 언론학적 분석. <한국방송학보>, 36권 2호, 34-71.
- 문재완 (2020a).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헌법적합성 검토. <외법논집>, 44권 1호, 101-123.
- _____ (2020b). 범죄보도와 무죄추정원칙. <언론과 법>, 19권 2호, 77-111.
- 심석태 (2016). <사례와 쟁점으로 본 언론법의 이해>. 서울: 컬처룩.
- 박상기 (2013). <형법학>. 서울: 집현재.
- 박영흠 (2020). 법조 뉴스 생산 관행 연구: 관행의 형성 요인과 실천적 해법. <한국언론정보학보>, 101호, 268-304.
- 박용규 (2011). 한국 신문 범죄보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5권 2호, 156-185.
- 박지애 (2020. 3. 25.). 'n번방' 양형기준 마련에 착수한 대법원... 국민의견 담길까. <파이낸셜뉴스> URL: <https://www.fnnews.com/news/202003251447590369>
- 박희봉·한동섭 (2020). 범죄보도에서 알 권리와 인격권의 조화: 수사공보규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19권 1호, 97-143.
- 양재규 (2017). 범죄수사 관련 보도자료 기사화(일명 '수사기관 처널리즘')의 법적 문제점. <미디어와 인격권>, 3권 1호, 179-208.

- 이승선 (2020). ‘공인’이란 누구인가?. <언론과 법>, 19권 2호, 115-162.
- 이승선·김연식 (2008).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제19권 가을호, 65-94.
- 이재진 (2022). 알 권리 개념의 변화와 새로운 지평. <언론중재>, 165호, 4-17.
- 임찬중 (2019). 피의사실공표·보도 필요성과 정당성 조건. <관훈클럽>, 2019년 겨울호, 11-18.
- 정영주·박성순 (2020). 피의사실보도의 언론면책 요건과 쟁점. <언론과 법>, 19권 1호, 61-95.
- 조기영 (2022).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69집, 165-195.
- 최형원 (2020. 3. 25.). ‘n번방 운영자 1년 선고’에 항소도 안한 검찰... 부랴 부랴 재수사, <KBS>, URL: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10101&ref=A>
- 한상훈 (2021). 피의사실 공표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전적, 절차적 예방의 모색. <형사정책>, 32권 4호, 247-283.
- 허경미 (2013).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죄의 논쟁점.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51호, 283-308.

■ **ABSTRACT**

The Requirements for the Report of Facts of Suspected Crime

- Principles for Ethical Criminal Investigation Reporting -

Young Heum Park
Senior Researcher, Korea Press Foundation

The media's indiscriminate reporting of facts related to suspect crimes has been a recurring source of social controversy, yet clear standards and principles for responsible criminal investigation reporting have not been established. There are conflicting arguments, either dismissing all reporting of suspect crime facts or advocating that such reporting is entirely acceptable.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seeks to establish standards for ethical criminal investigation reporting by striking a balance between judicial principles focusing on the rights of the suspect and journalistic principles emphasizing the public's right to know. Drawing from court precedents and journalistic codes of ethics, the study identifies and proposes seven requirements to justify reporting of facts related to suspected crimes. It argued that such reporting is permissible under the following cases: first, when the suspect is a public figure; second, when it contributes to public safet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third, when there is no dispute about the guilt or innocence of serious antisocial crimes. Nevertheless, the study also argued that the following requirements should be met even in these cases. Fourth, independent reporting and cross-verification are

required. Fifth, there must be a balance between investigators and suspects. Sixth, transparency of sources is necessary. Seventh, there should be no live coverage of each investigation stage. The proposed approach advocates against a strict prohibition on all reports of facts related to suspected crime while cautioning against indiscriminate coverage. Instead, it recommends that the media report carefully and responsibly under limited and specific conditions. The study also applied the proposed requirements to actual cases of criminal investigation coverage to identify problems and improvements. It acknowledges the difficulty of meeting all seven requirements consistently in every story; however, news consumers increasingly demand exceptionally high ethical standards from the media, which faces a serious crisis of trust and must adapt to survive.

Keywords: facts of suspected crime, criminal investigation reporting, journalism, journalism ethics

[논문투고일 2023. 6. 19. 논문수정일 2023. 7. 10. 게재확정일 2023. 7. 24.]